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 1.24.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의 타당성 검토 및 설립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장관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기한 및 제출 필요 서류를 규정함(안 제6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3) 행정규제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시·도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시·도서비스원의 설립·통합·해산 타당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립”을 “설립, 통합 또는 해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서비스원의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효과”를 각각 “영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직”을 “사업, 조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설립, 통합 또는 해산의 필요성 및 적정성
6.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7.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활용 계획 및 그 적절성

제6조의 제목“(시·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시·도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도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계획서를 통합 또는 해산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통합 또는 해산 사유
2. 시·도서비스원의 통합 또는 해산이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3. 시·도서비스원의 통합 또는 해산에 따른 대책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도서비스원의 설립 타 당성 검토) ①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서 비스원의 <u>설립</u>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시·도서비스원의 <u>설립· 통합·해산</u> 타당성 검토) ① - ----- ----- <u>설립, 통합 또는 해산</u> - ----- ----- ----- . 다만 시·도서비스원의 <u>해산</u>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u>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u>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1. <u>설립, 통합 또는 해산의 필요성 및 적정성</u>
2. 주민복리에 미치는 <u>효과</u>	2. ----- <u>영향</u>
3. 지역경제에 미치는 <u>효과</u>	3. ----- <u>영향</u>
4. 지방재정에 미치는 <u>효과</u>	4. ----- <u>영향</u>
5. <u>조직</u> 및 인력수요의 적정성	5. <u>사업, 조직</u> -----
<신 설>	6. <u>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u>
<신 설>	7. <u>소요 예산과 재원조달·활용 계획 및 그 적절성</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도서비스원 설립 협의)	제6조(시·도서비스원 <u>설립·통합 ·해산</u> 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도서비스원 <u>통합 또는 해산</u> 협의를 요청하려는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u>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도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계획서를 통합 또는 해산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통합 또는 해산 사유</u> <u>2. 시·도서비스원의 통합 또는 해산이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u> <u>3. 시·도서비스원의 통합 또는 해산에 따른 대책</u> <u>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u> ③ 제1항 또는 제2항-----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214